

# 비전임교원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

시행일: 2025.04.01.

**제1조(목적)** 본 세칙은 「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비전임교원 처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비전임교원은 「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처우)** ① 비전임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「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허용된 강의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강의료를 지급하고, 책임강의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「보수규정」 제16조 제8항에 따라 미충족 강의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환수한다.

- ② 임용기간 중 책임강의시간이 변경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여부는 대학(원)별로 결정한다.  
③ 명예교수, 겸임교수는 학기 중 강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급여 또는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(명예교수)**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 최초 추대일로부터 2년까지는 강의료의 2배를,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의료로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겸임교수)** ① 겸임교수는 책임강의시간을 매주 3시간으로 하여 월 급여는 75만원을 지급하며,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최대 매주 6시간까지 강의료 기준으로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

- ② 제2항에서 겸임교수가 특수대학원 강좌 및 취업강좌를 담당하는 경우 최대 매주 2시간까지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하되, 초과강의료 산정 시에는 매주 책임강의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한다.

**제6조(객원교수 및 초빙교수)** 객원교수, 초빙교수의 처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학기당 책임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출하되, 교원의 역할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학(원)교원인사소위원회 또는 캠퍼스교원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- 급여는 매주 6시간 미만 담당 시에는 학기 중에만 지급하고, 매주 6시간 이상 담당 시에는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. 단, 퇴직금 지급 조건 시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7조(학술연구교수)** ① 학술연구교수는 재원이 교비인 경우 해당교원의 경력 및 연구실적을 검토하여 전임교원 해당 직급의 60%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재원이 외부 연구비인 경우에는 그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소속 부서장과 산학협력단장이 협의하여 교무처장에게 급여지급을 의뢰한다. 다만,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”에 따라 임용하는 학술연구교수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저 급여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학술연구교수가 연구 외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를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고황명예교수) ① 비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의 처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**

1. 교육트랙: 해당 학기의 담당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료의 3배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.
  2. 연구산학트랙: 3시수 기준 강의료의 3배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며, 강의 수행 시 제1호의 교육트랙 강의료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.
- ②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의 처우 기준은 경희대학교의료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9조(석좌교수) 석좌교수의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**

**제10조(특임교수) 특임교수의 처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**

**제11조(산학협력중점교수)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처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**

**제12조(에미넌트 스칼라 및 인터내셔널 스칼라)** 에미넌트 스칼라와 인터내셔널 스칼라의 처우는 에미넌트·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**제13조(예외규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우를 달리 할 수 있다**

1. 외국인
2.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자
3. 강의와 더불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빙된 자
4.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여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
5.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14조(보칙)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**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 조치)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비전임교원은 차기 재계약시부터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 조치) 본 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비전임교원은 차기 재계약시부터 본 시행세칙을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 조치)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발령된 겸임교수의 월급여는 시행일로부터 본 시행세칙에 따라 책정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시행세칙은 201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규정 제3조 제4항은 본 규정 개정일 이후 신규임용하는 교수(명예)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수(명예)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수(명예)의 처우는 종전 시행세칙에 따른다. 다만, 책임강의시간을 미충족한 경우 「보수규정」 제16조 제8항에 따라 미충족 강의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환수한다.

제3조(고황명예교수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고황명예교수는 종전 시

행세칙 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처우를 유지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 시행세칙에 따른 처우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황명예교수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임상계열 고황명예교수는 종전 시행세칙 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처우를 유지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